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0010010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0. 02. 12. <http://www.mbcbeauty.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 06. 04.

MBC아카데미 뷰티학원

정 보 공 개 서

(주)뷰티르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 .

(주)뷰티르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위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9, 4층(서초동, 백향빌딩)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3482-0527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599-561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프랜차이즈 상품운영팀(02-3482-0527)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지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교육과정, 본사 구입물품 내역 및 권장가격

3. MBC아카데미뷰티학원 학칙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뷰티르사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9, 4층(서초동, 백향빌딩)			
	설립일	법인 설립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3. 6. 13.	2003. 6. 13.	2003. 6. 13.	김재경	02-3482-0527	02-599-5611
	법인등록번호	110111-2799489		사업자등록번호	214-87-3645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임원)	김재경	MBC아카데미 뷰티학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9, 4층(서초동, 백향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재경	02-3482-0527	02-599-5611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특수관계인	메가스터디교육 (주)	엠베스트SE 하이엠수학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1 (서초동, 덕원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손성은	02-3498-4014	02-3498-8644
	법인등록번호	110111-5685966	사업자등록번호	780-87-00034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MBC아카데미뷰티학원'이라 합니다)의 내용

명 칭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상 호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지점
■ MBC 아카데미뷰티학원 B.I	

MBC아카데미 뷰티학원

MBCACADEMY BEAUTY INSTITUTE



○ 귀하는 앞으로 아래 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홈페이지 및 브로셔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년	9,877,801	8,524,449	1,353,351	12,268,310	-48,033	-357,090
2023년	7,293,083	7,795,785	-502,702	11,082,667	-640,688	-1,799,185
2024년	6,361,089	7,678,195	1,317,105	8,579,255	-885,899	-836,676

○ 재무상황에 대한 근거는 별지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재경	사내이사	2025.01.02. ~ 현재	(주)뷰티르샤 사내이사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명	0명	57명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 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메가스터디 교육(주)	가맹사업 경영	2017.02.08.~현재	엠베스트SE라는 가맹사업 경영 (등록번호 : 20161290)
특수관계인	메가스터디 교육(주)	가맹사업 경영	개시 예정	하이엠수학이라는 영업표지로 정보공개서 등록 (등록번호 : 20250571)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MBC아카데미 뷰티학원'은 별도의 등록 상표(서비스표)는 아니며, 당사는 'MBC아카데미'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한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엠비씨씨앤아이와 메이크업, 헤어 네일, 스킨케어 등 미용관련 학원 운영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MBC아카데미 뷰티스쿨(학원)'의 영업표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일자)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MBC 아카데		4119990014642(1999. 10. 2. 출원) 4100685260000(2001. 6. 7. 등록)	주식회사 문화방송	2031. 6.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

미		2021. 6. 7. 존속기간갱신등록	만료일까지 계약 갱신을 통해 가 맹본부 사용)
---	--	----------------------	------------------------------

- 따라서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목적과 방법으로 'MBC아카데미 뷰티학원'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MBC아카데미'의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외의 목적이나 방법으로 'MBC아카데미' 상표(서비스표)를 사용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위 'MBC아카데미' 상표권의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사업 현황

1. MBC아카데미뷰티학원을 시작한 날

- 2003년 6월 13일
- MBC아카데미뷰티학원의 브랜드 개시일 : 2002년 12월
- 2003년 6월 (주)마이코스메틱으로부터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사업권 양수

2.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주)마이코스 메틱	mbc아카데미 뷰티학원		2002. 12. ~ 2003. 6. 12.	
(주)뷰티르사		한준수 노택우	2003. 6. 13. ~ 2003. 7. 2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8-2 통영빌딩 12층
		한준수 이재민	2003. 7. 25. ~ 2003. 8. 5.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8-2 통영빌딩 12층
		한준수	2003. 8. 5. ~ 2006. 3. 29.	서울 서초구 방배동 858-36 우남빌딩 3층
		한준수 김영안	2006. 3. 30. ~ 2009. 9. 2.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5-14 신동아건설빌 딩 3층
		한준수	2009. 9. 2. ~ 2015. 9. 20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1-23 명림빌딩 4층
		한준수 이정진	2009. 9. 21. ~ 2015. 12. 31.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1-23 명림빌딩 4층
		김채호	2015. 12. 31. ~ 2016. 3. 24.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1-23 명림빌딩 4층
			2016. 3. 24. ~ 2021. 11. 30.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7, 2층(대치동, 오 토웨이타워)
			2021. 12. 1. ~ 2023. 3. 8.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7, 3층(대치동, 오 토웨이타워)
			2023. 3. 9. ~ 2023. 7. 10.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이상제	2023. 7. 10. ~ 2024. 6. 27.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김재영	2024. 6.28. ~ 2025. 1. 1.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2, 30층(신도림동, 디큐브시티)
		김재경	2025. 1. 2. ~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9, 4층(서초 동, 백향빌딩)

3.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업종

영업표지	업종	
MBC아카데미뷰티학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교육	직업훈련학원(미용교육)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

(단위: 개)

지역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1	21	10	27	20	7	26	19	7
서울	4	-	4	4		4	4		4
부산	1	1	-	1	1		1	1	
대구	1	1	-	1	1		1	1	
인천	2	-	2	1		1	1		1
광주	-	-	-						
대전	2	2	-	2	2		3	3	
울산	1	-	1	1	1		1	1	
세종	-	-	-						
경기	8	6	2	9	7	2	9	7	2
강원	2	2	-	2	2		1	1	
충북	1	1	-	1	1		1	1	
충남	3	2	1	2	2		2	2	
전북	-	-	-						
전남	1	1	-	1	1		1	1	
경북	1	1	-	1	1				
경남	3	3	-	1	1				
제주	1	1	-	0	0		1	1	

5. 바로 전 3년간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19	3	1	-	1	21
2023	21	2		3		20
2024	20	2	1	2	1	19

6.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특수관계 인	메가스터 디교육(주)	엠베스트SE	20161290	초중등 대상 전과목 교육	463/-	419/-	401/-
특수관계 인	메가스터 디교육(주)	하이엠수학	20250571	초중등 대상 수학과목 교육	-	-	-

2024년 현황은 향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 제외)과 그 산정기준

-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 수	2024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평균매 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9	476,515	3,015	1,300,000	13,769	55,561	491	18개점 대상
서울	0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1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0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0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3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0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7	766,208	4,395	1,300,000	13,769	151,433	569	7개점 대상
강원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2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0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0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0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1	해당없음					5곳 미만
----	---	------	--	--	--	--	-------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 사업자의 포스 또는 물류공급액 추정(물류공급액*2.5)을 근거로 산정한 것입니다.(연도 중 계약종료, 해지 및 6개월 미만 운영 가맹점의 매출액은 제외하였습니다).
- 해당기간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각 가맹사업자의 매출액은 대개의 경우 평균매출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일부 평균매출액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점의 평균영업기간

mbc아카데미뷰티학원의 바론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19	3,105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무소가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에서 2024년에 MBC아카데미뷰티학원과 관련하여 광고선전비로 사용한 금액은 675,641천원입니다.

- 2024년에 각 가맹점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제외하고 전체 광고 및 판촉비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은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본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부담하는 기준은 정보공개서 제[29]쪽을 참고하십시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귀하의 가맹사업개시일 이전에 가맹금 등의 지급을 받지 않고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의 경우 물적담보 및 인적담보로 제공받고 있으므로, 현재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등의 내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계약이행 보증금, 기타 비용)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

- 귀하가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맹사업개시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은 없습니다.

2) 계약이행 보증금

- 귀하는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는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현금 예치가 아닌 물적 담보와 인적담보의 제공만을 받고 있습니다.
- 귀하가 납입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의 내역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담보목적물	50,000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상호사용료 및 물품 대금의 미지급, 수강생에 대한 환불 의무의 불이행 등 가맹본부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	가맹점사업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또는 동산에 질권설정
인적보증	실 운영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불일치 할 경우에 한하여 실 운영자에게 전액 연대보증 요구	계약 당일		계약서와 별도로 보증약정 체결

3) 예치 가맹금

- 당사는 귀하의 가맹사업개시일 이전에 가맹금 등의 지급을 받지 않고 있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의 경우 현금 예치가 아닌 물적담보 및 인적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없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 귀하는 가맹사업개시 이전에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가 정한 기준 및 사양에 따라 인테리어, 간판, 설비 등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시설 및 설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아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 가맹점 운영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면적 3.3m²당	반환조건	비 고
총계		16,000				
내장공사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	11,50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50%이상,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단 지급 비율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50	공사 전 계약취소	33m² 기준
냉난방시공 및 간판	가맹점사업자 선정업체	4,500		450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 스스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여야 하며, 다만 당사는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맹점 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강사 및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정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강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 관련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 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6. 12.>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② 학원 설립, 운영자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2.>
1. 제1항제4호의 경우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②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3.25.>

①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제[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호사용료	(주)뷰티르사	월 900 ~ 월 4,500	당월 05일			영업지역의 범위 등 시장 규모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결정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분담금	(주)뷰티르사					전체 광고에 대한 비용은 당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전체 광고에 정액 또는 정률로 분담하기로 한 내역은 없음, 추가 부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지점사장단회의를 통해 분담금액 및 지급 방법 등을 결정
판촉분담금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주)뷰티르사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 교육 내용에 따라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가맹점 사업자 부담

보수비용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분 담비용을 제 외한 나머지				[43] 페이지 참조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주)뷰티르사	연 12%	지 급 기 일 의 다음날 부터 지급 하는 날까 지			상호사용료, 물품대금, 광 고 및 판촉활동 분담금 기 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금이 지급기한을 지연하였을 경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점검의 경우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사는 현재까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추후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감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현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영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당사가 정한 기준 및 학원 회계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리에 따라 매출현황, 수강생 등록현황, 상품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회계관련 자료 및 매출계획을 가맹본부 요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호사용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

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제[27]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MBC아카데미뷰티학원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영업표지 등의 사용 및 MBC아카데미뷰티학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일체의 교육 및 영업행위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계약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물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에 대해 당사에 반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계약이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반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하거나 제거하여야 하며,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MBC아카데미뷰티학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여야 할 품목은 없으며, 당사는 이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는 MBC아카데미뷰티학원 브랜드의 통일성 및 교육과정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에 사용되는 교육재료 및 부재료 중 일부에 한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제품을 아래와 같이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귀하가 별지 2. 에 기재된 물품을 당사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MBC아카데미뷰티학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바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교육과정만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가 승인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일부 교육과정의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재료 및 부재료를 사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가 승인한 교육과정 및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재료 및 부재료의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 귀하가 별지에 기재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재료 및 부재료를 사용하여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지에 기재된 교육과정, 교육재료 및 부재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귀하는 수강생을 모집하여 해당 수강생에 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수강생에 한하여 당사가 제공한 교육자료 및 부재료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귀하는 수강생 관리에 있어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MBC아카데미뷰티학원학칙' 및 당사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MBC아카데미뷰티학원학칙은 별지와 같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교육과정별로 수강료 및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자료 및 부재료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으신 경우 당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귀하가 당사가 지정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미용관련 학원사업	MBC아카데미뷰티학원	메가스터디뷰티아카데미학원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시행 이전에 체결된 가맹계약서 제5조 제1항의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는 지역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조 시행 이전에 체결된 가맹계약서 제5조 제2항을 기준으로 영업지역을 인정하고 있었으므

로, 본조 시행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별도의 추가 협의를 통하여 영업지역을 표시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가맹계약서 제5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이를 영업지역으로 인정합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 기준	가맹계약서 기재된 점포소재지를 기준으로 영업지역 설정기준에 따른 행정구역
○ 서울시·광역시 : 구당 1 점포	○ 서울시·광역시 : 점포소재지가 위치한 "구" 지역
○ 그 외 시지역 : 시당 2 점포	○ 그 외 시지역 : 점포소재지가 위치한 "시" 지역 내에서 별지에 표시한 지역
○ 그 외 군지역 : 군당 1 점포	○ 그 외 군지역 : 점포소재지가 위치한 "군" 지역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지역의 범위 내에서만 가맹점운영권을 인정하며, 해당 지역 외에서 점포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이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당사는 수강생에게 1회에 한하여 전학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강료 등의 정산은 당사가 정한 학칙에 따라야 합니다. 학칙은 별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55.85%	44.15%	0.00%	0.00%

2) 바로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가맹계약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갱신 시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6조 제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 가맹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조 제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고, 최초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이에 따라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1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9조 ①항 1호
○ 귀사가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제반 인, 허가의 취득 및 갱신을 해태하는 경우	제39조 ①항 2호
○ 귀사가 가맹비 등 금전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제39조 ①항 3호
○ 귀사가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 및 재교육의 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교육비용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제39조 ①항 4호
○ 귀사가 당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	제39조 ①항 5호
○ 귀사가 당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용역의 판매 내용 등을 변경하거나 당사에 의해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9조 ①항 6호
○ 물품대금이나 상호사용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제39조 ①항 7호
○ 당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사 이외의 자로부터 매입을 하거나 당사의 검사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제39조 ①항 8호

○ 귀사가 규정에 의한 시설, 기기 등의 보수, 교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제39조 ①항 9호
○ 귀사가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39조 ①항 10호
○ 귀사가 판촉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제39조 ①항 11호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사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9조 ③항 1호
○ 귀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39조 ③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사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 ③항 3호
○ 귀사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9조 ③항 4호
○ 귀사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③항 5호
○ 귀사가 가맹계약서 제39조 제1항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39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③항 6호
○ 귀사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9조 ③항 7호
○ 귀사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9조 ③항 8호
○ 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9조 ③항 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귀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제42조에 따라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당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의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승인요청시로부터 1개월 이내) (거절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승인요청시 기재한 영업양도예정일 등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승인취소 가능) (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규계약을 통해 완전한 계약기간 부여 가능)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프랜차이즈 상품운영팀 (02-3482-0527)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영업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 운영권의 대리행사 또는 영업위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운영권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이 서면으로 양도 신청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영업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지) → 당사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영업을 승계할 자의 면담 포함 약 30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불가능	-	-	
업무위탁	불가능	-	-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존속기간 중에 귀하가 직접 또는 제3자의 명의로 MBC아카데미뷰티학원과 동일한 영업을 하거나 경쟁업체의 가맹점을 개설하거나 MBC아카데미뷰티학원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당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메이크업, 헤어, 네일, 스킨케어 등 미용 관련 학원 운영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프랜차이즈 상품운영팀 (02-3482-0527)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MBC아카데미뷰티학원의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일수	비고
1주 5일, 매월 20일 이상	문의: 프랜차이즈 상품운영팀 (02-3482-052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일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사전에 통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점검의 경우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점검기준에 의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까지 당사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한 바는 없으며, 추후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감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사업의 활성화,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전국 규모 및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행사	상품광고	본사부담 원칙	전국지점사장단회의에서 결정하여 전체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별행사의 경우와 동일함		인터넷키워드, 잡지, 라디오, 신문광고 등
	가맹점모집 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행사	행사에 따라 전국지점사장단회의에서 결정			전국지점사장단회의에서 행사 및 가맹점부담액 결정 제시 →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부담금 확정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가맹본부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이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당사는 현재까지 미용관련 사업 내지 학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또한 미용관련 학원사업의 특성상 수도권 내지 광역시를 중심으로 가맹점이 운영되며 상권분석이나 점포개발의 경우 귀하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당사는 귀하가 미용관련 사업 내지 학원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없는 경우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귀하가 기존에 미용관련 사업 내지 학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6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위 기간은 추정된 기간이며, 협의과정, 인허가 요건 구비여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구분	주요내용	
합계		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문의 접수	D-60
사업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59~58
내부검토	- 영업지역 중복여부 - 가맹희망자의 학원사업경력 - 사업성 검토	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D-47~44
가맹계약 체결	- 계약체결 - 계약이행보증계약체결(담보권설정등)	D-43
인테리어 공사	- 공사실시	D-43~2(약 43일)
인·허가	- 교육청 인가	D-10~2(약 7일)
개점승인	- 인허가 구비여부 점검 - 영업시설 점검	D-1
점포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 해당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MBC아카데미뷰티학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입직원OJT	회사 소개 본사조직 및 부서별 담당업무 제품설명 기본적인 전산사용 방법 서비스마인드 교육	집단강의	입사 후 1년 이내 (연4회 중 1회 참석)	필수 교육
강사교육	피부/네일/헤어/메이크업 강의방법 등	실습교육 집단강의	파트별 수시교육	권장
관리부교육	학원운영에 필요한 내용	집단강의	연 1회	권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입직원	1일(8시간)	가맹사업자 부담 없음	입사 후 1년 이내 1회 이수
강사교육	필요시 일정 수립		수시교육
관리부교육	1일(8시간)		연 1회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각 교육별로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자 및 가맹사업자의 직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구분	참석대상
신입직원교육	지점의 신입직원
강사교육	강사
관리부교육	지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직원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반 교육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직원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강남지점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2길 31, 2층
2	서울	동대문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5-9 코스모타워 10~13층(광희동)
3	서울	천호지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13층(천호동)
4	서울	영등포지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6길 9, 2층(영등포동4가)
5	인천	구월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2, 9층(구월동)
6	경기	수원지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5, 9층(매산로1가)
7	경기	부천시점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75 한빛프라자 3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4년 5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967,861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국세청신고금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별 지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교육과정, 본사 교육재료(물품) 구입 현황
3. MBC아카데미뷰티학원 학칙

별지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2의 1) MBC아카데미뷰티학원
교육과정, 본사 교육재료(물품) 구입 현황

※ 각 수강료 및 교육재료(물품) 공급가격 내역은 당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으신 경우 당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자료(물품)내역(품목, 규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지 2의 2)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년도(2024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하한 가격이 없는 품목은 가격변동이 없었던 품목입니다.

별지 3. MBC아카데미뷰티학원 학칙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프랜차이즈 상품운영팀 (02-3482-0527) 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mbcbeauty.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